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펀 드 명	BNK튼튼배당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효 력 발 생 일	2023년 03월 21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제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제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제5영업일(D+4)</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5영업일(D+4)</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과세	문구 추가	- <문구 추가>	-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u>

		- <문구 추가>	<p>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	--	-----------	--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용어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u>대차대조표</u>	- <u>재무상태표</u>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제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p> <p>-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제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제5영업일(D+4)</u>에</p>	<p>-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p> <p>-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u>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u>5영업일(D+4)</u>에 관련</p>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과세	문구 추가	- <문구 추가> - <문구 추가>	-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 <u>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3.03.2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가. 투자 대상 ① ~ ② (생략)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①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가. 투자 대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u>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①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p>(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u>)(이하 "채권"이라 한다)</p> <p>②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u></p> <p>③ ~ ⑦ (생략)</p> <p>⑧ 증권의 대여 <u><주식 추가></u></p> <p>⑨ 증권의 차입 <u><주식 추가></u></p> <p>⑩ ~ ⑫ (생략)</p> <p>(2)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p> <p>① (생략)</p> <p>②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p>	<p>(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u>)(이하 "채권"이라 한다)</p> <p>②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u></p> <p>③ ~ ⑦ (현행과 동일)</p> <p>⑧ 증권의 대여 주2) <u>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u></p> <p>1. <u>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u></p> <p>2. <u>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u></p> <p>⑨ 증권의 차입 주3) <u>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u></p> <p>⑩ ~ ⑫ (현행과 동일)</p> <p>(2)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p>
--	---	---

	<p>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③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④ ~ ⑧ (생략)</p> <p>⑨ 증권에의 대여 <주석 추가></p> <p>⑩ 증권에의 차입 <주석 추가></p> <p>⑪ ~ ⑫ (생략)</p> <p>나.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1)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① (생략) ② 이 투자신탁 ~ 있습니다. 가. (생략)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p>	<p>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③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④ ~ ⑧ (현행과 동일)</p> <p>⑨ 증권에의 대여 주2) <u>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u> 1. <u>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u> 2. <u>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u></p> <p>⑩ 증권에의 차입 주3) <u>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u></p> <p>⑪ ~ ⑫ (현행과 동일)</p> <p>나.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1)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① (현행과 동일) ② 이 투자신탁 ~ 있습니다. 가. (현행과 동일)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p>
--	--	--

		<p>어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이하 생략)---</p> <p>③ ~ ⑧ (생략)</p> <p>(2)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p> <p>④ (생략)</p> <p>② 이 투자신탁 ~ 있습니다.</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이하 생략)---</p> <p>③ ~ ⑧ (생략)</p>	<p>어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③ ~ ⑧ (현행과 동일)</p> <p>(2)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이 투자신탁 ~ 있습니다.</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③ ~ ⑧ (현행과 동일)</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p> <p>-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p>	<p>가. ~ 나. (생략)</p> <p>다. 기타 투자위험</p> <p><위험 추가></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p>	<p>가. ~ 나. (현행과 동일)</p> <p>다. 기타 투자위험</p> <p>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p>

		<p>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u>5.28%</u>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결산일 : <u>2022.1.13</u>) (이하 생략)</p>	<p>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u>5.7064%</u>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결산일 : <u>2023.1.13</u>) (이하 현행과 동일)</p>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가. 매입 (1) ~ (2) (생략)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생략) (4) ~ (5) (생략) 나. 환매 (1) (생략)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D+3)</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5영업일(D+4)</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가. 매입 (1) ~ (2) (현행과 동일)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현행과 동일) (4) ~ (5) (현행과 동일) 나. 환매 (1) (현행과 동일)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5영업일(D+4)</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p>

		합니다. (3) ~ (8) (생략) 다. (생략)	다. (3) ~ (8)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 대조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나. (생략)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나. (현행과 동일)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1) ~ 2) (생략) 가.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신설>	1) ~ 2)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u>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 ※ 기타비용은 <u>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u> - <u>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u> ※ <u>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u> - <u>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u> * <u>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내역</u>
14. 이익배분 및	- 자본시장법 시	가. 이익배분	가. 이익배분

<p>과세에 관한 사항</p> <p>행령 개정사항 반영</p> <p>-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u>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u> (이하 생략)</p> <p>나. 과세</p> <p>투자소득에 ---(<u>생략</u>)--- 나누어집니다.</p> <p>(1) ~ (3) (<u>생략</u>)</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S-P 가입자</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수령요건: 55세 이후 <u>10년간</u>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p> <p>- 세액공제: [납입금액]</p> <p>-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①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u>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u>납입액 600만원</u> 이내</p> <p>② <u>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u>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p> <p>③ (<u>생략</u>)</p>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만원</u> 이하(근로소득</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기준 가격으로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u> (이하 <u>현행과 동일</u>)</p> <p>나. 과세</p> <p>투자소득에 ---(<u>생략</u>)--- 나누어집니다.</p> <p>(1) ~ (3) (<u>현행과 동일</u>)</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S-P 가입자</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수령요건: 55세 이후 <u><삭제></u>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p> <p>- 세액공제: [납입금액]</p> <p>-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①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u> 이내. <u><삭제></u></p> <p><u><삭제></u></p> <p>② (<u>현행과 동일</u>)</p>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 500만원</u> 이하(근로</p>
---	--	---

	<p>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신설></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가입자</p> <p>- 세액공제:</p> <p>-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p>	<p>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u>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u></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가입자</p> <p>- 세액공제:</p> <p>-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삭제></p>
--	---	--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 5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1. 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가. 요약재무정보 - <항목 추가>	가. 요약재무정보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2023.02.27 기준으로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생략)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생략)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이하 생략) 나. ~ 라. (생략)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현행과 동일)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 (이하 현행과 동일) 나 ~ 라. (현행과 동일)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	-------------------	---	---

		<p>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p> <p>▶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p>	<p>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법 시행령 제224조의2</u>에 <u>서</u>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p> <p>▶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가. 정기보고서 (1) (생략)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p>	<p>가. 정기보고서 (1) (현행과 동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p>

	<p>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이하 생략)</p>	<p>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

<끝>.